

[] 사 용 검 사 []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

(제1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5일	
신청구분	[]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[]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		[]전체 []공구별 []동별		임시 사용승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	[]주택건설사업 임시 사용승인 []대지조성사업 임시 사용승인		[]전체 []일부		
승인번호				공사착공일	
신청인 (건축주)	상 호			등록번호	
	대표자			법인등록번호	
	영업소소재지	(전화번호:)			
	[]지방자치단체(지방공사포함)		[]민간건설업체		[]주택조합
	[]개인		[]한국토지주택공사		[]기타
설계자	성 명			자격번호	
	사무소명			등록번호	
	사무소소재지	(전화번호:)			
시공사	상 호			등록번호	
	대표자			법인등록번호	
	영업소소재지	(전화번호:)			
감리자	상 호			등록번호	
	대표자			법인등록번호	
	사무소소재지	(전화번호:)			
대지조건	대지위치				
	지 번			지 목	
	용도지역	용도지구	용도구역		
사업계획개요			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.		
대지면적(㎡)		건축면적(㎡)			
건폐율(%)		연면적(㎡)			
용적률산정용연면적(㎡)		용적률(%)			
건축물명칭	주건축물수	동	부속건축물	동	㎡
주 용 도	주 택 형 태	총 세 대 수		세대	
총주차대수	대	착공예정일	준공예정일		

부대시설	시 설 종 류	설 치 현 황	단지 내 현황	단지 외 현황
	※ 전기·도로·상하수도·통신설비·주차장·조경시설·관리사무소·보안등·TV공청시설·비상급수시설·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			

복리시설 분양시설	용 도		면 적(㎡)	개 소
	주민 공동 시설	[]경로당		
		[]어린이놀이터		
		[]어린이집		
		[]주민운동시설		
		[]작은도서관		
		[]기타		
		계		
	[]근린생활시설			

난방방식		[]중앙집중공급방식 []개별기름보일러 []개별가스보일러			
		[]지역난방 []기타			
취사용 가스시설		[]액화석유가스(LPG) []도시가스 []기타			
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		개			
오수정화시설		형식		용량	(인용)
주차장	구분	옥내	옥외	인근	면제
	자주식	대 ㎡	대 ㎡	대 ㎡	대
		전기자동차 대	전기자동차 대	전기자동차 대	
	기계식	대 ㎡	대 ㎡	대 ㎡	

「주택법」 제4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([]사용검사를 []임시사용승인을)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 지 사 귀하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첨부서류	1. 감리자의 감리의견서(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시공자의 공사확인서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I. 동별 개요

주/부속구분	[]주건축물 []부속건축물									
동 명칭 및 번호										
건 축 주										
설 계 자										
감 리 자										
시 공 자										
주 용 도										
주택유형별 세 대 수	공 공 부 문								민 간 부 문	
	[] 국민임대	[]공공임대				[] 공공분양	[] 사원임대	[] 근로복지	[] 민간임대	[] 민간분양
		소계	5년	10년	기타					
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	세대
주 구 조										
지 붕										
건축면적(㎡)										
연 면 적 (㎡)										
지하면적(㎡)										
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(㎡)										
층 수	지하: 층, 지상: 층									
높 이(m)										
승 강 기	승용승강기: 대, 비상용승강기: 대									
층 고										
반 자 높 이										
평 면 형 식	[]계 단 실 형 []복 도 형									
계 단 유 효 폭										
복 도 너 비										
외 벽 두 께										
인접세대와의 벽 두 께										

※ 유의사항: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·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.

II. 총별 개요

III. 형별 개요

○ 형별 구분	○ 복층 여부	주택 구분	세대수	전용 면적 (㎡)	공용 면적 (㎡)	면적 합계 (㎡)	침실		부엌		화장실		거실		목욕탕	
							개소	㎡	개소	㎡	개소	㎡	개소	㎡	개소	㎡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형		[]국민 []민영														

※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
IV. 회계 개요

※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
[illegible]

V.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

※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.

[illegible]

Ⅵ.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

※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.

주 건 축 물 의 등 명 칭 및 번 호	층 구 분	호 구 분	소유자성명(명칭)	소유권 지 분	구 분 기 호
			주민등록번호(부동산등기용등 록번호)		
			주 소		
				/	
				/	
				/	
				/	
				/	
				/	

Ⅶ. 집합건축물전용/공용면적표

※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.

구분기호					
전용/공용	주/부	층구분	구 조	용 도	면 적(㎡)

구분기호					
전용/공용	주/부	층구분	구 조	용 도	면 적(㎡)

구분기호					
전용/공용	주/부	층구분	구 조	용 도	면 적(㎡)

Ⅷ. 공구별개요

※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·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공 구 명					
공구별 사업개요			※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.		
대지면적(㎡)		건축면적(㎡)		연면적(㎡)	
해당 동 명칭		주 건 축 물 수	동	부속건 축 물	동 ㎡
주 용 도		주 택 형 태		세 대 수	세대
주차대수	대	착공(예정)일	※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,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.		
		사용검사(예정)일	※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,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,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.		

공구별 부대시설 · 복리시설 · 분양시설		※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.		
부대시설	시 설 종 류	설 치 현 황	단지내 현황	단지외 현황
	※ 전기 · 도로 · 상하수도 · 통신설비 · 개별난방 또는 중앙(지역)난방 · 주차장 · 조경시설 · 관리사무소 · 보안 등 · TV공청시설 · 비상급수시설 ·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			

복리시설 분양시설	용 도		면 적(㎡)	개 소
	주민 공동 시설	[]경로당		
		[]어린이놀이터		
		[]어린이집		
		[]주민운동시설		
		[]작은도서관		
		[]기타		
		계		
[]근린생활시설				

공구별 주차장			※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.		
주 차 장	구 분	옥 내	옥 외	인 근	면 제
	자주식	대 ㎡	대 ㎡	대 ㎡	대
	기계식	대 ㎡	대 ㎡	대 ㎡	

※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.

근 거 법 규

「주택법」 제49조

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

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

유 의 사 항

「주택법」 제102조제12호

「주택법」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작 성 방 법

1.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.
2.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.
3.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.
4. 전용/공용부분의 구조·용도·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[예: 아파트(24A, 24B, 32A, 32B 등), 상가(A, B, C, D 또는 101, 102, 201, 202 등)].
5.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.
(다만,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"복층하층"으로, 위층은 "복층상층"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)
- 공용부분인 경우: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"각 층"으로,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.
6. 주택단지를 분할·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~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,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7. 제2쪽 "난방방식": "중앙집중공급방식"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, "개별기름보일러"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, "개별가스보일러"는 세대별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, "지역난방"은 집중된 대규모 열 생산시설(열병합발전시설 등)에서 주택으로 열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, "기타"는 태양열난방,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을 말합니다.
8. 제2쪽 "가스시설": "액화석유가스"는 단지 내에 저장소를 설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, "도시가스"는 별도의 가스공급시설에서 도시가스를 해당단지로 공급하는 경우, "기타"는 위의 방식 이외의 가스 시설을 말합니다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